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6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3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광상·유 용·최영수·김동율·

박기열·전철수·허기희·김진철·

김인호·김영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따로 정하고,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그 밖에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”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”으로 수정함(안 제4조)

나. “행정자치부”을 “행정안전부”로 변경함(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회계법, 정부조직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”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”으로,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원칙)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해야 한다.</p>	<p>제4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----- ----- ----- 행정안전부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집행기준)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자치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집행기준) ① ----- ----- 행정안전부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정보공개범위)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, 절차 등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」가 정하는 바에</p>	<p>제8조(정보공개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」-----</p>

따른다.

② (생략)

---.

② (현행과 같음)